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(5급 2명)을 증원하고,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지원정책관, 공정채용기반과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,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(5급 1명, 6급 4명, 7급 4명) 및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0명(7급 10명, 8급 45명, 9급 85명)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,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51명(6급 225명, 7급 376명, 8급 150명)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7명(6급 68명, 7급 115명, 8급 44명)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00000호, 2021. 1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산운용팀 및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00. ~ 1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의2제3항 중 “제21호 및”을 “제21호, 제21호의2, 제21호의3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4항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

9의3.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

별표 5 중 총계 “608”을 “610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02”를 “604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45”를 “47”로 한다.

별표 6 중 총계 “627”을 “62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21”을 “623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45”를 “47”로 한다.

별표 18 제1호가목1)부터 3)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나목1), 2) 및 5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

목 3) 4), 6) 및 7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고용노동부령 제6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(고용노동부령 제1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, 고용노동부령 제2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고용노동부령 제26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의 제목 중 “존속기간”을 “존속기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”을 “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“존속기간”을 “존속기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존속기간”을 각각 “존속기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·② (생략)	제3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정책기획관은 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4호의2, 제5호부터 제12호까지, 제20호, <u>제21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</u> 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1호, 제21호의2, 제21호의3 및</u> ----- -----.
④ ~ ⑬ (생략)	④ ~ ⑬ (현행과 같음)
⑭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⑭ ----- ----- ---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9의2. <u>고용노동 분야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,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<신설></u>	9의2. <u>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</u> 9의3. <u>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</u>
10. ~ 13. (생략)	10. ~ 13. (현행과 같음)
⑮ (생략)	⑮ (현행과 같음)
고용노동부령 제68호 고용노동부	고용노동부령 제68호 고용노동부

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자산운용팀의 <u>존속기간</u>)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산운용팀의 <u>존속기간</u> 은 <u>2021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제2조(자산운용팀의 <u>존속기한</u>) ----- ----- <u>존속기한</u> 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 -----.
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<u>존속기간</u>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<u>2021년 12월 31일까지</u> 존속한다.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<u>존속기한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12월 31일</u> ----- -.
② 제1항에 따른 <u>존속기간</u> 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<u>존속기간</u> 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.	② ----- <u>존속기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존속기한</u> ----- ----- -----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5]

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08</u>	<u>610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602</u>	<u>604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	<u>45</u>	<u>47</u>	+2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6]

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27</u>	<u>629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621</u>	<u>623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	<u>45</u>	<u>47</u>	+2
·	·	·	
·	·	·	